



제416회국회(임시회)
제 2 차 교 육 위 원 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대상으로 대안교육기관 추가〉

■ 문정복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811호)

■ 조정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985호)

2022. 8.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문정복의원안】

1. 발 의 자 : 문정복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4. 7. 16.
3. 회부연월일 : 2024. 7. 17.

【조정훈의원안】

1. 발 의 자 : 조정훈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7. 19.
3. 회부연월일 : 2024. 7.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정복의원안】

현행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학교안전
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의
범위에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등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가 포함되어 있음.

한편,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2021. 1. 12, 제정, 2022. 1. 13, 시행)됨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을 현행법에 따른 학교의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대안교육기관을 학교의 범위에 포함하여 학교안전사고로부터 학생·교직원 등을 보호하고,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마목 신설).

【조정훈의원안】

현행법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한편,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하는 대안교육기관은 현행법에 따른 학교에 포함되지 않아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대안교육기관 역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현행법에 따른 학교와 같이 안전사고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가입 대상 학교의 범위에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하여 대안교육기관 학생 및 교직원 등에 대해서도 학교안전사고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단서 및 마목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가입 대상 학교의 범위에 “「대안 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하여 해당 기관의 학생 및 교원 등에 대하여도 학교안전사고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마목 신설).

현행	문정복의원안	조정훈의원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제2조(정의) ----- ----- -----.
1. “학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1. ----- ----- ----- -----.	1. ----- ----- ----- -----.
가. ~ 라. (생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가. ~ 라. (현행과 같음)
<u><신설></u>	마. 「 <u>대한교육기관에 관한 법률</u> 」 제2조제2호에 따른 <u>대한교육기관</u>	마. 「 <u>대한교육기관에 관한 법률</u> 」 제2조제2호에 따른 <u>대한교육기관</u>
2. ~ 6. (생략)	2. ~ 6. (현행과 같음)	2. ~ 6. (현행과 같음)

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함) 제11조에서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이하 “학교안전공제”라 함)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12조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등에 대하여 학교안전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음¹⁾.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대안학교²⁾”의 경우,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며³⁾ 학력이 인정되는데, 2024년 6월 기준 52개교가 설립·운영되고 있음,

1) 「학교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이하 “초·중등학교”라 한다)

다.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

라.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제11조(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이하 “학교안전공제”라 한다) 사업을 실시한다. 다만, 제2조제1호라목의 한국학교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학교안전공제사업을 실시한다.

제12조(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가 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학교장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2)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대안학교)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7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대안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대안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초·중등교육법」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②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상의 대안학교 외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대안교육기관법”이라 함)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대안교육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⁴⁾⁵⁾, 현재 256개 기관이 등록되어 있음.

< 대안학교와 대안교육기관 비교 >

구분		대안학교(각종학교)	대안교육기관
개요	목적	·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실시	·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 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해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 교육 실시
	법적근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현황 (‘24. 6월)	52개교	256개 등록
운영	학력인정	학력 인정	학력 미인정
	모집단위	지역/전국단위	자율
	학생선발	학칙으로 규정	자율
	교육과정	학칙으로 편성 (국어, 사회 교과는 교육과정 상 수업시수 50% 이상)	자율
재정	재정지원	재정결함보조, 목적사업비 등 시도별 상이	별도 규정 없음
	수업료	자율로 정함	운영위 심의
인가, 지정 등		교육감 인가	교육감 등록

자료 : 교육부

4)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 5) 그밖에 “대안교육기관”으로의 등록 및 등록취소 요건과 절차, 등록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조사, 설립·운영자의 결격사유 및 교원의 자격 등을 규정하여 그 동안 법적인 지위가 없이 공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의 학생 안전과 교육의 질 제고를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학교안전공제의 가입대상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 등에 한정되고 있고,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은 그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대안교육기관”을 「학교안전법」상의 “학교”의 범위에 포함하여 학교안전공제의 가입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대안교육기관의 학생과 교원 등을 학교안전사고 피해로부터 구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 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대안교육기관법」의 제정취지를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한편, 2020년 3월부터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은 “청소년활동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⁶⁾, 청소년활동안전공제는 학교안전공제와 비교시 의무가입이 아닌 임의가입이고, 구체적으로 공제료, 피공제자, 보장범위, 보상한도 등에서 제도상 차이가 있음⁷⁾.

6) 교육부 보도자료, 「이젠 학교 밖 청소년까지 안전사고 공제보상 혜택」, 2020.3.3.

7) 공제료의 경우 각급별로 공제료를 산정하는 학교안전공제와 달리 학생 1인당 공제료를 산정하고 있어 중고등학생의 경우 학교안전공제의 부담이 더 큰 측면이 있고, 제3자의 피해배상에 대한 손해배상도 지원하고 있는 반면, 피공제자가 학생에 한정되고 보상한도(사고당 한도 등)가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차이가 있음.

< 학교안전공제와 청소년활동안전공제 비교 >

구분	학교안전공제	청소년활동안전공제
목적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행하는 수련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
사업자	각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가입자 (의무여부)	유치원 및 초·중·고, 특수학교, 평생교육시설의 장 등 (의무 가입)	청소년수련시설의 장 (임의 가입)
피 공 제 자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수련시설 장의 관리감독하에 수련활동을 하는 자
공제료 (24년)	유(3,600원), 초(4,700원), 중(11,300원), 고(16,100원)	학생 1인당 10,260원
보장 범위	교육활동 중 신체 상해 및 특정 질병* * 일사병, 이물질 섭취 및 접촉, 외상으로 인한 질병 등	수련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공제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물 피해 및 피공제자로 인한 제3자의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
보상 한도	사고당 한도는 없음 (사망 시 최대 2억 원 지급)	대인사고 1사고 당 10억 원 등
가입 현황 (23년)	20,539개교(5,769,597명)	213개 기관(12,365명)

자료 : 교육부

개정안에 따르면 구체적인 공제료, 피공제자 범위, 보장범위 및 보상한도 등의 차이뿐 아니라 안전공제에 의무 또는 임의가입 여부에 있어서 기본적인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

학교안전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경우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안전확보를 통한 학습권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교육감의 인가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설립·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동 기관의 자율성보장과 안전권 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별로 문정복의원안에 따르면 대안교육기관은 학교안전 공제 관련 규정 뿐(제3장부터 제11장)만 아니라 ‘학교’ 또는 ‘학교장’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동법상의 다른 규정⁸⁾에도 적용되어 학교 안전교육 실시 의무,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확인 의무 등이 부여되는 반면, 조정훈의원안에 따르면 학교안전공제 관련 규정에 한하여 대안교육기관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는 차이가 있음.

참고로, 최근 학교안전법 개정법률(법률 제18463호, '21.9.24. 개정, '22.3.25. 시행)에 따르면, 대학에 대한 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 근거를 규정하여, 공제중앙회에서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사고 보상공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대학이 선택적으로 해당 공제사업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음⁹⁾.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회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법률안 개정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8) 제4조(학교안전사고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의3(실태조사), 제5조(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제8조의2(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확인 의무), 제9조(명예학교안전요원 위촉) 등

9) 제29조(공제중앙회의 사업) ①공제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교안전사고 예방정책의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2.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의 운영
3. 학교안전공제 제도에 대한 조사·연구
4. 학교안전공제 공제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대한 조사·연구
5. 제2조제1호라목의 한국학교에 대한 학교안전공제사업

5의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한 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

6.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공제회의 업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업

< 개정안 관련 관계부처 및 기관등 의견 >

구분	개정안에 대한 의견
교육부	○ 대안교육기관은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각종 의무를 적용시 분쟁발생 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학원의 경우 학원법제4조제3항에 안전조치 관련 운영자의 책무를 별도 규정하고 있는 바, 대안교육기관도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안교육기관법」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
교육청	○ (경기도, 제주도) 취지에 공감하나, 대안교육기관의 장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외국인학교와 같이(제12조단서) 학교안전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가입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세종시) 청소년활동 안전공제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별도 조문 신설은 불필요함
학교안전 공제회	○ 학교안전관련 책무의 적용 가능성 및 실태파악의 어려움, 청소년 활동안전공제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185

참 고

대안교육기관 현황 ('24.6월 기준, 시도교육감 등록)

□ 시도교육청별 대안교육기관 등록현황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78	9	7	7	12	11	2	1	69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8	4	7	6	11	11	7	6	256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등록된 기관 현황

교육청		기관명	교육청		기관명
1	서울	DGA디아글로벌학교	40	서울	꿈꾸는아이들의학교
2	서울	자라섬예주랑예술학교	41	서울	단재학교
3	서울	거꾸로캠퍼스	42	서울	은평씨앗학교
4	서울	서울기독교학교	43	서울	창창한
5	서울	한국연예예술학교(위탁)	44	서울	보스코
6	서울	스쿨제프	45	서울	아름다운학교
7	서울	자리학교(위탁)	46	서울	안골마을학교
8	서울	소울브릿지학교(위탁)	47	서울	영세프스쿨
9	서울	세움학교(위탁)	48	서울	이야기학교
10	서울	푸른나무미디어스쿨	49	서울	IT비전학교
11	서울	다애다문화학교(위탁)	50	서울	인투비전스쿨
12	서울	에인미용예술학교(위탁)	51	서울	꿈틀학교
13	서울	금빛나래학교(위탁)	52	서울	서울정릉발도르프학교
14	서울	반석	53	서울	인디학교
15	서울	푸른나무학교	54	서울	소리를보여주는사람들
16	서울	남북사랑학교	55	서울	꿈이있는학교
17	서울	기쁨의학교(위탁)	56	서울	내일더하기
18	서울	청소년희망학교(위탁)	57	서울	꿈더하기학교
19	서울	두리하나국제학교(위탁)	58	서울	성미산학교
20	서울	사람사랑나눔학교(위탁)	59	서울	꿈터학교
21	서울	서울빛들발도르프학교	60	서울	와플
22	서울	별하학교(위탁)	61	서울	꿈이룸학교
23	서울	아우름학교	62	서울	청소년도서관 작공
24	서울	꿈미학교	63	서울	더유스
25	서울	크리스천글로벌스쿨	64	서울	우리들학교
26	서울	링컨학교(위탁)	65	서울	서울꽃피는학교
27	서울	성모마음행복학교(위탁)	66	서울	삼각산재미난학교
28	서울	동방	67	서울	교육공간 민들레
29	서울	예하예술학교(위탁)	68	서울	숲나학교
30	서울	예룸예술학교(위탁)	69	서울	네스트학교
31	서울	사비오학교	70	서울	나눔공동체학교
32	서울	다음학교	71	서울	빛의자녀학교
33	서울	글로벌리더학교(위탁)	72	서울	킹씨드해피스쿨

교육청		기관명	교육청		기관명
34	서울	청소년문화공간JU역촌동	73	서울	성장학교 별
35	서울	정암기독교학교	74	서울	사랑의학교
36	서울	원두	75	서울	열방아카데미학교
37	서울	노엠스쿨	76	서울	한밀기독교학교
38	서울	내일새싹학교	77	서울	르네상스학교
39	서울	몽담몽담	78	서울	넥스트챌린지스쿨
79	부산	온새미학교	84	부산	부산링크학교
80	부산	부산발도르프학교	85	부산	반디기독교학교
81	부산	거침없는우다다학교	86	부산	나드림학교/칼리지
82	부산	부산글로벌참교육학교	87	부산	세움학교
83	부산	부산참빛학교			
88	대구	대구링크학교	92	대구	히즈리더학교
89	대구	꿈꾸는음악학교	93	대구	지앤씨학교
90	대구	동일프로이데 제1학교	94	대구	갈릴리학교
91	대구	유니스학교			
95	인천	대안교육기관 다사랑문화학교	99	인천	대안교육기관 온누리꿈의학교
96	인천	대안교육기관 오하비 리더십학교	100	인천	대안교육기관 경인링크학교
97	인천	대안교육기관 열음학교	101	인천	대안교육기관 수정비전학교
98	인천	대안교육기관 이봄학교			
102	광주	무진일움학당 무진일움학교	108	광주	겨자씨교육선교회 겨자씨크리스찬스쿨
103	광주	청소년공간 날다	109	광주	광주홍사단 래미학교
104	광주	(사)지혜교육공동체 지혜학교	110	광주	사단법인청소년광산문화의 집 광주밀알두레학교
105	광주	징검다리배움터 늘품	111	광주	사단법인산아래 산아래학교
106	광주	YMCA 별별학교	112	광주	세품기독교학교
107	광주	YMCA 해밀학교	113	광주	화월주성장학교다운
114	대전	세계로기독교학교	120	대전	트윈사성학교
115	대전	한우리기독교학교	121	대전	새로남기독교학교
116	대전	대전자유발도르프학교	122	대전	세빛스쿨
117	대전	늘사랑기독교학교	123	대전	장자기독교학교
118	대전	유니온크리스찬학교	124	대전	큰산학교
119	대전	대전하바나학교			
125	울산	울산링크학교	126	울산	대영드림홈스쿨아카데미
127	세종	글로벌선진학교세종창의캠퍼스			
128	경기	153월드크리스천스쿨	163	경기	새이레기독교학교
129	경기	LT혁신학교	164	경기	샘물교육선교회
130	경기	OMC크리스천스쿨	165	경기	샘물학교
131	경기	SLG무릎위의학교	166	경기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
132	경기	가나안스쿨	167	경기	성남자유발도르프학교
133	경기	고양발도르프학교	168	경기	소명나무학교
134	경기	고양자유학교	169	경기	소명학교
135	경기	그레이스기독교학교	170	경기	수원성민학교
136	경기	글로벌리더스기독교학교	171	경기	수원칠보산자유학교
137	경기	꿈틀자유학교	172	경기	수지꿈학교

교육청		기관명	교육청		기관명
138	경기	나들목학교	173	경기	쉐마학교
139	경기	나무숲세움터	174	경기	시흥소명학교
140	경기	나스솔레	175	경기	안양YMCA초등대안버리학교
141	경기	다문화국제학교	176	경기	안양발도르프학교
142	경기	다산학교	177	경기	양평자유발도르프학교
143	경기	더불어가는배움터길	178	경기	예수향남기독교학교
144	경기	더샘물학교	179	경기	우리기독교학교
145	경기	더힘스쿨	180	경기	원천하나기독교학교
146	경기	동림자유발도르프학교	181	경기	은혜의동산기독교학교
147	경기	동부서밋크리스천스쿨	182	경기	이루다학교
148	경기	동탄기독교학교	183	경기	이음학교
149	경기	두레줄기학교	184	경기	주빌리대안학교
150	경기	드림하늘학교	185	경기	중등수원칠보산자유학교
151	경기	디모데학교	186	경기	지구촌기독교학교
152	경기	릭스쿨	187	경기	채리티크리스천아카데미
153	경기	맑은샘학교	188	경기	청계자유발도르프학교
154	경기	밀알두레학교	189	경기	초등무지개학교
155	경기	부천새날학교	190	경기	카라크리스천스쿨
156	경기	불이학교	191	경기	파주자유학교
157	경기	브니엘비전스쿨	192	경기	평화의샘교육공동체
158	경기	산돌학교	193	경기	푸른숲발도르프학교
159	경기	산울배움공동체	194	경기	한국국제예술학교
160	경기	산학교	195	경기	한꿈학교
161	경기	새물결기독교학교	196	경기	현산크리스천스쿨
162	경기	새움학교			
197	강원	예닮글로벌학교	201	강원	새숨학교
198	강원	영강쉐마기독교학교	202	강원	산돌자연학교
199	강원	이끌라318기독교사관학교	203	강원	해솔직업사관학교
200	강원	세인기독교학교	204	강원	협동조합다인학교
205	충북	마이폴학교	207	충북	하디글로벌스쿨
206	충북	좋은열매기독교학교	208	충북	대안교육기관 제천간디학교
209	충남	높은뜻씨앗학교	213	충남	사사학교
210	충남	벤자민인성영재학교	214	충남	폴앤다니엘기독교학교
211	충남	시내산학교	215	충남	꿈의학교
212	충남	별무리학교			
216	전북	토기장이학교	219	전북	전주글로벌시민학교
217	전북	이랑학교	220	전북	신성학기독교학교
218	전북	실상사 작은학교	221	전북	글로벌하담기독교학교
222	전남	뉴젠리더십학교	228	전남	지오학교
223	전남	사랑어린학교	229	전남	무등자유발도르프학교
224	전남	순천어깨동무학교	230	전남	늦봄문익환학교
225	전남	더힘스쿨	231	전남	장흥다니엘학교
226	전남	잇다자유발도르프학교	232	전남	광주국제기독교학교
227	전남	지오초등학교			
233	경북	상주희망학교	239	경북	그루터기기독교학교
234	경북	김천희망학교	240	경북	상주비전스쿨

교육청		기관명	교육청		기관명
235	경북	다문화대안예술학교	241	경북	왈덴스학교
236	경북	청자연학교	242	경북	동일프로이데제2학교
237	경북	경주늘봄학교	243	경북	제자국제크리스천학교
238	경북	해러문화예술학교			
244	경남	마산링크학교	248	경남	이레기독교학교
245	경남	꽃피는학교	249	경남	밝은덕배움터
246	경남	한빛기독교학교	250	경남	넥스트아카데미
247	경남	산청간디마을학교			
251	제주	대안교육기관 보물섬학교	254	제주	대안교육기관 엘리스 학교
252	제주	대안교육기관 하울람예쉬바학교	255	제주	대안교육기관 나무와숲 학교
253	제주	대안교육기관 동백작은학교	256	제주	대안교육기관 제주법씨학교